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12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오영훈·송재호·양향자

이용빈 · 김승원 · 김윤덕

인재근 • 이은주 • 박재호

도종환 · 홍정민 · 김병욱

이개호・양정숙・홍문표

김회재 · 정태호 · 최종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 험지역
-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 4.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생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
	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u>붕괴위험지역</u>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
	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u>상습설해지역</u>
	4.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
	정되는 지역